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자체평가규칙

규정번호	6-3-19		
제정일자	2014.08.14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0	총페이지	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동양미래대학교 특성화 사업단(이하 “본 사업단” 이라 한다)의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특성화 사업의 차년도 사업계획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자체평가” 라 함은 본 사업단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4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수행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수립 영역
2. 조직 및 운영 영역
3. 성과지표 영역
4. 기타 사업단장이 필요로 하는 영역

제5조(항목별 평가)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평가 등급은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평가시기)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평가시기는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평가기구

제7조(전담부서) ①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한 평가 전담부서는 특성화 사업단으로 한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업무총괄
2.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에 관한 업무
3. 자체평가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
4. 평가결과의 공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반영
5. 자체평가 역량 향상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① 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내외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업단장을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실태 평가
2. 세부 사업별 평가계획 수립
3. 사업비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평가
4.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계획 수립
5. 개별사업 결과분석 및 종합평가
6. 그 밖의 사업평가에 관련된 주요 사항

제9조(간사)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10조(평가계획수립) 특성화 사업단은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평가 실시 2개월 전에 수립하여 확정한다.

제11조(평가자료제출) 사업운영 부서는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특성화 사업단에 제출한다.

제12조(평가실시) ① 특성화 사업단에서는 평가기초자료를 작성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실사)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사업운영 부서에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보고)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 부서 확인 후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평가결과 통보 및 공시) ① 평가결과는 평가 종료 후 1개월 안에 사업운영 부서에 통지한다.

② 자체평가 전담부서는 평가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규칙의 개정) 이 규칙의 개정은 평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 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필요한 기타 세부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확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은 본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